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률고문 선정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이라 한다.)은 기정원 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원내 법률자문에 대응할 법률고문을 선정·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수행 업무

- 아래 법률고문 직무에 대한 제반 법률문제 상담 및 서면 의견 제시

< 법률고문 직무 >

1. 기정원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 기정원 업무와 관련한 법령, 행정규칙, 내부규정의 제·개정,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협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4. 그 밖에 기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정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신청 자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경우 담당 변호사를 3인 이내로 지정하며 책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여야만 함

< 법률고문 결격사유 > (위촉예정일 기준)

1.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영구제명), 제2호(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
2.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3년 이하의 정직)의 징계를 받은 후 5년, 제4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징계를 받은 후 2년, 제5호(견책)의 징계를 받은 후 1년의 기간이 각 지나지 않은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자
4. 과거 기정원 법률고문에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위촉 조건

- 위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 자문료 : 매월 50만원 지급(부가세 포함)

4.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 5월 27일(목)
-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마감일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ysj@tipa.or.kr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협약체결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제출시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순번에 따라 PDF 파일 1개로 병합
 - 2) PDF 파일에 “TIPA 법률고문 제안서_기관명” 으로 워터마크 삽입
 - 3) 파일명을 “TIPA 법률고문 제안서_기관명” 으로 저장
 - 4) 이메일 제목에 “TIPA 법률고문 제안서_기관명” 표시

순번	서 식 명	양식	비 고
①	제안서(표지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	붙임 1	필수
②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③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서약서	붙임 2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⑦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 4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시
⑩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⑪	법조경력 및 공공분야 경력 증명 서류	-	
⑫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	붙임 5	
* 양식은 지정원 홈페이지(www.tipa.or.kr) 공지사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제안요청서 내 붙임 1~5 사용 ** 접수기간 이후 수정·보완은 불가			

5. 기타사항

- 자문료는 우리 원 내부규정 「강사수당 등 지급지침」 중 회의·자문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함
 -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도과 시마다 자문료 지급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률고문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6.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후관리실 담당자(☎ 044-390-0742)